

##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□ 개정이유

교육연구원의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수행상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·조사를 분장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현재 사무과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연구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조사연구부·지도보급부·진로교육부·교육평가부 및 사무과 순으로 개정함 (안 제3조제1항).
-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부서 서열에 따라 재조정함 (안 제4조 - 제8조).

□ 근거법령 : 해당없음

□ 조례안 : 별 첨

#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예산상황 : 해당없음.

##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"서무과, 조사연구부, 지도보급부, 진로교육부, 교육평가부"를 "조사연구부·지도보급부·진로교육부·교육평가부 및 서무과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,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"를 "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,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"로 한다.

제4조를 제8조로, 제5조를 제4조로, 제6조를 제5조로, 제7조를 제6조로, 제8조를 제7조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